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례 제 2069 호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 회 사 무 국	2
○ 조 례 제 2070 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 획 예 산 과	4
○ 조 례 제 2071 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 획 예 산 과	12
○ 조 례 제 2072 호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전 총 괄 과	15
○ 조 례 제 2073 호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총 무 과	20
○ 조 례 제 2074 호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	평 생 교 육 과	25
○ 조 례 제 2075 호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 축 수 산 과	29
○ 조 례 제 2076 호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복 지 정 책 과	33
○ 조 례 제 2077 호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노 인 장 애 인 과	35
○ 조 례 제 2078 호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노 인 장 애 인 과	46
○ 조 례 제 2079 호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 육 정 책 과	50
○ 조 례 제 2080 호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환 경 보 전 과	52
○ 조 례 제 2081 호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	공 원 녹 지 과	57
○ 조 례 제 2082 호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식 품 위 생 과	59
○ 조 례 제 2083 호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치매정신건강과	63
○ 조 례 제 2084 호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간 석 건 강 생활지원센터	68

공 고

○ 공 고 제 949 호	보상계획열람공고(남발촌 소로2-2호선 도로개설공사)	도 시 재 생 과	75
---------------	------------------------------	-----------	----

고 시

○ 고 시 제 52 호	도시계획시설(광장: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광장)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도 시 재 생 과	79
--------------	--	-----------	----

회 람								
--------	--	--	--	--	--	--	--	--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4년 5월 9일

남동구 조례 제2069호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은 이미 지원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부당 사용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1조제3항)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4년 5월 9일

남동구 조례 제2070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남동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동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관리”로 한다.

제3조(「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5조(「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문화재에 대한 감면)”을“(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제6조(「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1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정보통신사고	정보통신과
국방부	1.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행정안전부	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뭍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안전총괄과, 관련부서 도로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농축수산과
문화체육관광부	1.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농축수산과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사고 2. 원유 수급 사고 3. 전력 사고 4.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생활경제과 〃 기업지원과 〃
보건복지부	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	보건행정과
환경부	1.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환경보전과

고용노동부	1.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안전총괄과, 기업지원과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도로터널 사고 3. 육상화물운송 사고 4. 지하철 사고 5.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도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국가유산청	1. 국가유산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산림청	1. 산불 2. 산사태	공원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지 2]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9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쉼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국가유산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환경조형물
 -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 다. 벽화
 - 라. 슈퍼그래픽
 -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쉼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

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법률이 개정(2024.5.17. 일괄 시행)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문화재→국가유산)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치법규 중 ‘문화재’ 용어가 사용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문화재’ 등 용어 정비 :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4년 5월 9일

남동구 조례 제2071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개정)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를 “「행
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로 한다.

제2조(「남동구 공인 조례」의 개정)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16조 중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사항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2023.6.27.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치법규 중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인용조문 정비 :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 그 밖에 띄어쓰기 오류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4년 5월 9일

남동구 조례 제2072호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

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관할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

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경비 지원에 필요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구청장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수행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3. 4. 27.)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 제정에 따라 목적 조항 개정 : (안 제1조)
- 지원 범위의 구체화를 위한 조항 개정 : (안 제4조)
- 지원의 명확화를 위한 지원 절차 신설 : (안 제5조)
- 경찰서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조항 개정 : (안 제8조)

조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4년 5월 9일

남동구 조례 제2073호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전보, 교육·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출산, 가족 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와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구의 출자·출연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8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모집, 채용, 전보, 승진, 복리후생, 퇴직 등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차별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차별행위의 예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불리한 처우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4년 5월 9일

남동구 조례 제2074호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구민들의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능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남동구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관할 교육청, 관내 교육기관 및 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사회의 주도적인 소통매체가 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과 해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주요사항의 자문(안 제5조)
- 재정지원(안 제6조)
- 업무의 위탁(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4년 5월 9일

남동구 조례 제2075호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지역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4. 치유농업 서비스의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 및 체험
5. 치유농업 관련 산·학·연·관 협력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 강사
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도시화 가속화로 농지 및 농업활동이 축소되고 있으나 농업활동을 통한 치유적 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음
- 도시농업과 더불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4조)
-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안 제5조)
- 전문가의 자문(안 제6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4년 5월 9일

남동구 조례 제2076호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참전명예수당의 인천시 군·구간 수당 격차 해소 필요성 대두와 국가보훈부의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이행 협조 요청 등에 따라 수당 관련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당 지원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인상 (안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4년 5월 9일

남동구 조례 제2077호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

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

제3조(보청기 구입비 지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고 장애가 미등록된 노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 지원받은 사람

2.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 지원 받은 사람

제6조(지원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담당자 확인	(서명 또는 인)	
지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청력상태	보청기 착용 전(진단서 결과)		
		우측	좌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자격여부	☐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미수급	청각장애 여부	☐ 비장애 ☐ 장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미수급시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보청기 지원여부	☐ 미지원 ☐ 지원 (년도)
	남동구 1년 이상 거주		☐ 해당 ☐ 비해당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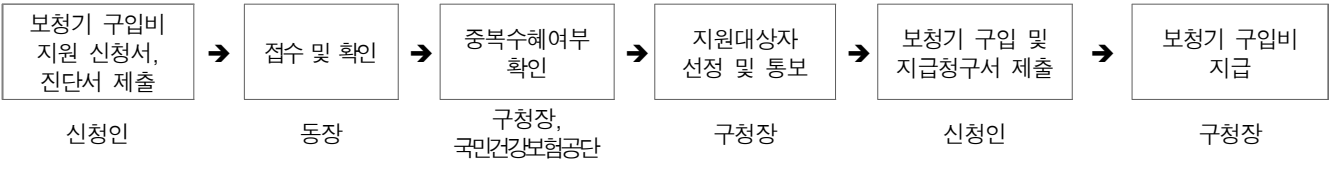
전화번호

남동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1. 진단서 1부
- 2.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뒷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 선정 및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구로구 거주기간, 건강(청력상태)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지급청구서”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받는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공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제공목적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지원 여부 확인 (과거 장애인이었던 자에 한함)

○ 제공기간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① 수급권자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구입일	
-------	--

③ 보청기 제품 정보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④ 구입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록):	

⑤ 실구입금액	⑥ 본인부담액	⑦ 지급금액 (청구금액)
원	원	원

⑧ 수령인	⑨ 금융기관 명	⑩ 계좌번호	⑪ 예금주	⑫ 생년월일
[]수급권자				
[]보청기 제조·판매자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⑬ 수급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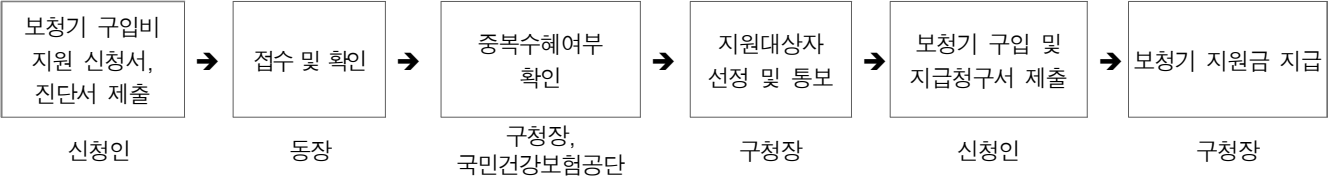
(뒤쪽)

첨부서류	1. 보청기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통장사본(수령인) 1부 3. (보청기 구입 비용을 청구하는 사람이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판매업증명서 각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②: 보청기를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③: 구입한 보청기의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④: 보청기를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록합니다)를 적습니다.
- ⑤: 구입한 보청기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 ⑥: 구입한 보청기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
- ⑦: 보청기급여의 지급금액을 적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중 보청기 급여 공단의 부담금액 한도 내 실구입비 적습니다.)
- ⑧: 보청기 구입비용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 ⑨~⑫: ⑧의 선택에 따라 보청기 구입 비용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청기 구입 비용을 받기로 결정된 자
 - 보청기 제조·판매자 :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 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별지 제3호서식]

보청기 물품확인서

○ 수급권자 성명	
○ 생년월일	
○ 담당공무원 확인	소속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보청기사진	



[별지 제4호서식]

보청기 구입비 지원 관리대장

연 번	지원대상자			지 원 내 역				비고
	성 명	생년월 일	주 소	신청일	지급일	금액	계좌번호 (거래은행)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사회의 심화에 따라 노인성 난청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전체 난청 환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 난청으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이 있지만 청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명시(안 제3조)
- 보청기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지원절차(안 제4조 ~ 안 제6조)
- 지원 대상자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안 제7조)
-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안 제8조)
- 지원 보청기의 사후관리(안 제9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4년 5월 9일

남동구 조례 제2078호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미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안 제4조)
-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안 제5조)
- 장애인 범죄 예방 및 보호·지원 교육(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4년 5월 9일

남동구 조례 제2079호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6세 미만의”를 “7세 이하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일부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나이 개념을 정비하여 미래의 주인인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영유아의 나이를 영유아보육법에 맞게(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개정 : 안 제2조제2호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4년 5월 9일

남동구 조례 제2080호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해

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6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 ① 구청장은 석면 비산 우려 지역 등에서의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하 이 조에서 “주민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단은 남동구에 거주한 주민 10명 이내로 구성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 내 환경 및 석면관련 분야 전문가
2.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추천하는 사람

③ 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
2. 석면해체작업 전 보양 및 위생설비 적정 여부
3.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
4.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
5. 석면해체 작업 후 석면잔재물 확인
6.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④ 구청장은 주민감시단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및 활동 참여 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주민감시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건축물에 사용한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여 남동구민이 석면 피해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안 제4조)
-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제 및 제거 등 처리 지원(안 제5조)
-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운영(안 제6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4년 5월 9일

남동구 조례 제2081호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남동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동 법 개정으로 관련 법률 조항 삭제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제정 2020.07.03. 조례 제1707호)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4년 5월 9일

남동구 조례 제2082호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21조에 따라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어린이에게”를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로 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어린이 급식용”을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어린이 급식”을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중전의 제4조)제2항 중 “법 제21조제3항”을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영 제12조의 2제1항 각 호”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2항 중 “제4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제명 개정 : (제명)
-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목적 개정: (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신설 : (안 제2조)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개정 :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4년 5월 9일

남동구 조례 제2083호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

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내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연계,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사회복귀지원사업
3.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사업
6.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이 도박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① 구청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교육, 신체적·정신적·사회적문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사업과 도박중독자 조기발견·상담 등 중독자 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10대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은 3년 새 78% 급증한 상황이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도박중독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치료 및 재활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도박중독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예방 및 치료 관련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4년 5월 9일

남동구 조례 제2084호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남동구 지역주민의 만성 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며 스스로 지역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 자율조직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남동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
5.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건강협의체,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구성·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

활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최소 5명 이상 배치하며, 센터의 사업 규모 및 사업내용 등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동구보건소장
2.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 부서장
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지원) ① 협의체 수당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위치 및 관할 구역(제3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 구역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41번길 18	간석1·2·3·4동 만수2·3동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99, 2층일부, 3층	장수서창동 서창2동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으로 구민의 건강한 삶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제2조)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등 : (안 제3조)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 : (안 제4조)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 : (안 제5조)
- 지역건강협의체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제13조)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949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남발촌 소로 2-2호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5. 9.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357번지 일원
다.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남발촌 소로 2-2호선 도로개설공사
라. 사업의 규모: L=55m, B=8m, A=696㎡
마. 사업기간: 2022. 7. 28. ~ 2024. 12. 31.

2. 열람 및 이의 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2024. 5. 9. ~ 2024. 5. 24. (15일)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그린벨트팀(☎032-453-2976)
다. 열람내용: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장물건 등 누락여부 확인

라. 이의신청 방법: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열람기간 이후 이의신청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나. 보상대상 ※조서참조

- 토지: 수산동 357-2 외 9필지
- 지장물: 사업구간 내 지장물에 한함

다. 보상방법

- 계약 체결 후 개인별 현금 지급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제3자의 권리(압류, 근저당권 등)가 있는 경우, 계약전 제3자의 권리가 말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체결시에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보상비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마.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 보상비 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4.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방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 1인 추천 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간: 2024. 5. 25. ~ 2024. 6. 25.

나.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서를 남동구청(도시재생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 및 작성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업체 : 감정평가사

○ 추천일 : 2024. . .

연번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인감 날인	전화번호	비고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 기재 및 인감 날인 필요하며 (대리인은 불가)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5. 기타사항

- 가. 보상장소,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맞춰 안내문을 별도 통지할 계획입니다.
- 나. 토지조서, 물건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보상이 불필요할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합니다.
- 다.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라. 미등기 상태의 실제 토지소유자의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남동구청 도시재생과)로 연락바랍니다.
- 바.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도새재생과(☎032-453-29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모지번	편입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 권리	
1	수산동	600	600-29	도	52	52	국	건설부				
2	수산동	598-6	598-12	구	24	24	국	농림축산식품부				
3	수산동	354-9	354-22	답	169	169	천*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65 ***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	
4	수산동	354-7	354-21	잡	229	229	이*승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62번길 ***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 지상권	
5	수산동	354-15	354-15	답	73	73	김*창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682-1 *****				
6	수산동	354-10	354-23	전	41	41	김*창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682-1 *****				
7	수산동	356	356-1	답	5	5	*****종친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대표자: 송*영
8	수산동	357	357-2	답	91	91	*****종친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대표자: 송*영
9	수산동	354-1	354-20	대	5	5	김*창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682-1 *****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근저당권	
							김*순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682-1 *****				
10	수산동	345-9	345-17	도	7	7	남동구	남동구 ***				
합계					696	696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4-52호

도시계획시설(광장: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광장)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광장: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광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공원녹지과☎453-6292, 도시재생과☎453-295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5. 9.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광장)
- 명칭: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광장 조성사업

3. 사업규모(변경)

- 당초: A=4,544.0m²
- 변경: A=4,536.7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남동구청장(공원녹지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20.08.13. ~ 2024.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 따로 붙임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지적 면적		편 입 면 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6,768	4,536.7	4,544	4,536.7						
1	장수동 62	전	1,157	865.7	874	865.7	남동구					
2	장수동 63-1	전	622	592.5	622	592.5	남동구					
3	장수동 63-2	전	311	324.4	311	324.4	남동구					
4	장수동 63-3	전	589	576.7	589	576.7	남동구					
5	장수동 63-6	전	359	373.9	359	373.9	남동구					
6	장수동 63-8	전	382	382.6	382	382.6	남동구					
7	장수동 63-15	전	167	160.3	167	160.3	남동구					
8	장수동 73	대지	210	210	210	210	남동구					
9	장수동 73-1	대지	3	3.4	3	3.4	남동구					
10	장수동 74	대지	225	225	225	225	남동구					
11	장수동 727-2	하천	2,739.0	818.2	798	818.2	환경부					
12	장수동 730-3	도로	4	4	4	4	남동구					